

탄소중립지원센터 규정

제정 2023. 5. 15.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센터는 상지대학교 부설 탄소중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센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에너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학문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센터는 상지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방안의 발굴과 시행
2.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3.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4.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축산·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
5. 지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역량 강화
6.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정보 및 통계의 작성
7.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연구원의 임면, 연구사업의 계획과 수행, 예산 및 결산,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본교의 교직원,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별도의 사무직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연구원 등) 연구원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교수·연구원 임용규정에 따른다.

제9조(연구보조원)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정리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교외 연구비와 수탁 연구비
2. 교내 연구비
3. 정부·지자체·대학의 보조금 및 기타 기부금
4. 기타 수입

제12조(회계연도 및 예산·결산)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규정 개정 및 해산) ① 센터의 규정 개정 및 해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센터가 해산되는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14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설연구소(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연구교수·연구원 임용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지침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기획예산팀-1123, 2023.05.16.)

이 규정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